

---

---

## 부 록

---

비교법연구소 규정  
『비교법학』 게재논문의 투고 및 심사규정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연구윤리규정  
『비교법학』 게재논문의 원고작성 요령  
비교법연구소 연혁 및 활동 실적



## 비교법연구소 규정

제정 1986. 4. 1

개정 1992. 3. 1, 1996. 10. 1, 2007. 3. 1, 2009. 7. 1.

제 1 조(명칭) 이 연구소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Institute of Comparative Law of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이하 “연구소”고 한다)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연구소는 법학의 국내·외적인 이론과 법제를 중심으로 비교법학적 연구활동을 전개하여 법학발전을 위한 올바른 학리를 추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문화 향상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법학교육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위치) 이 연구소는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 4 조(사업) 이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비교법학 및 관련 법제의 학술적 연구와 조사
2. 외국의 법령 및 서적의 번역출판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연구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5. 지역 발전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자문
6.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필요한 사업

제 5 조(구성) 이 연구소는 소장과 운영위원을 두고, 필요한 기구와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6 조(소장) ① 소장은 이 대학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  
이 위촉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제 7 조(위원) ① 이 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그 내용을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연구원) ① 이 연구소에는 연구원을 둔다.

② 이 연구소의 연구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 부설연구소  
연구원 운영관리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9 조(논문집편집위원회) ① 이 연구소의 논문집 편집 및 간행을 위하여  
논문집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논문집편집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  
한다.

③ 논문편집위원회는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심사, 편집과 간행  
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  
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이 연구소에 연구윤리의 확립 및 예방과 조사  
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소장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재원) 이 연구소의 재원은 자율적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  
술용역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그리고 대학의 연구지원금,

정부나 단체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비교법학』 게재논문의 투고 및 심사규정

제정 2001. 10. 1

개정 2007. 4. 30, 2009. 7. 1.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정기학술논문집 게재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투고자의 자격) 논문 투고자는 국내·외 대학의 전임·비전임 교원 및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연구자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가 투고할 수 있다.

제 3 조(투고의 방법) ① 투고할 논문은 전자우편(E-Mail)이나 우편(디스켓 동봉)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의 작성방법은 연구소에서 정한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제 4 조(투고의 기한) 논문은 논문집발간예정일 60일 전까지 이 연구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논문의 내용) 투고할 논문은 원칙적으로 이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 6 조(논문의 작성) 투고할 논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A4 20매)를 기준으로 한다.
- ② **호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되 전문용어의 경우 영어나 한자 등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다.

제 7 조(논문집 발행) ① 논문집은 매년 2월 28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년

1회 발행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추가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논문집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집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 8 조(논문집의 전자출판 등) ① 논문집은 종이 문서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논문집에 투고한 자는 투고 시에 전자출판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논문집에 투고한 논문은 법률문화 발전과 학문연구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전자도서관 등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  
의 필자는 발행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당해 논문은 전  
송되지 않고 즉시 삭제된다.

제 9 조(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회를 두며, 논문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위원장을 겸한다.

② 논문집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논문의 심사를 편집위원 이외의 당  
해 분야 전무가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⑤ 심사의뢰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익명으로 한다.

제10조(논문의 심사) ①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계와 논리성(연구주제의 중요도 및 학술적 가치 포함)
2. 이론적 근거의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의 독창성
4.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5. 원고작성요령의 준수

## 6. 기타 사항

- ② 논문의 심사는 각 항목별로 A, B, C의 등급으로 하고, C등급이 3항목 이상이면 게재불가로 한다.
- ③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심사판정) 심사위원은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현재대로 게재
2. 형식 수정후 본호게재, 내용 수정후 본호게재
3. 수정후 차호게재
4. 게재불가

제12조(심사결과 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사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 사이에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13조(개정)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 12. 20

개정 2009.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논문집(이하 “논문집”이라 한다)을 포함한 모든 간행물에 투고하여 심사 대상인 모든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소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5 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연구 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협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손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기피 · 제척 · 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신 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에서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 · 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9 조(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에 대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투고자격의 정지
5. 관계기관에의 통지

## 6. 적절한 조치

- ③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이의 신청)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제11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제출된 서면을 심의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새로운 사항이 있음이 인정된 때에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고, 공개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주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경비) 연구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비교법학』 게재논문의 원고작성 요령

### I. 원고의 투고

1. 원고는 비교법학 분야의 학술논문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오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원고지 150매(A4용지 20매)를 기준으로 한다.
3.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한다.
4. 국문주제어와 영문주제어는 5개 이상으로 한다.
5. 원고제출 시에는 제목, 저자이름, 소속기관 및 직위 등의 영문표기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6.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원고의 표지 이외에는 저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시를 할 수 없다.
7.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공동저술의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8. 원고는 3부를 작성하여 디스켓과 함께 보내거나, 전자메일을 통하여 비교법연구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9. 원고의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때에는 인쇄면수 1면당 소정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발표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II. 원고 작성 세부지침

#### 1. 목차의 순서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로마숫자), 1, (1), 1, ①, 가) 등의

순으로 한다.

## 2. 원고의 형식

- (1) 편집용지(A4)의 여백은 위쪽 60mm, 아래쪽 50mm, 왼쪽 51.5mm, 오른쪽 51.5mm, 머리말 13mm, 꼬리말 11mm로 한다.
- (2) 글자모양: 본문의 글자는 장평97%, 자간 0, 크기 9.6p로 하고, 문단모양은 들여쓰기 2, 낱말간격 10%, 줄 간격 175%로 한다.

## 3. 인용문헌의 표기

- (1) 처음 인용되는 경우
  - 1) 단행본 : 저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면.
  - 2) 논 문 : 저자, "논문제목", 게재학술지명 권 호, 연도, 면.
- (2) 반복 인용되는 경우
  - 1) 단행본 : 저자, 앞의 책(또는 전계서), 면.
  - 2) 논 문 : 저자, 앞의 논문(또는 전계논문), 면.

## 4. 참고문헌의 정리

- (1) 국내문헌, 외국문헌 순으로 정리하고, 동양의 것은 가나다순, 서양의 것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 (2) 참고문헌의 배열은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 인터넷 사이트 자료 순으로 정한다.
- (3) 국내문헌은 저자,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호, 연도 순으로 정리한다.
- (4) 영미문헌은 저자,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호, 출판지: 출판사, 연도 순으로 정리한다.

## 비교법연구소 연혁 및 활동 실적

### 비교법연구소 연혁 및 활동 실적

#### 1. 설립연도

1986년 4월 15일(자체), 1991년 9월 1일(학칙).

#### 2. 설립목적

법학의 국내외적인 이론과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법학적인 연구 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서 법학발전을 위한 올바른 학리를 추구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법학교육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한다. 세계화와 전문화 시대를 맞아 외국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외국의 법문화를 탐구하고 그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법학계는 물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국내외학술대회 및 논문집 발간, 각종 출판과 특강, 기타 부대사업을 수행한다.

#### 3. 역대 연구소장

- 1988. 12. 제1대 소장 최창동 교수
- 1990. 2. 제2대 소장 류시조 교수
- 1991. 2. 제3대 소장 정용상 교수
- 1992. 2. 제4대 소장 이태언 교수
- 1993. 9. 제5대 소장 정용상 교수
- 1994. 3. 제6대 소장 류시조 교수
- 1995. 3. 제7대 소장 김교숙 교수

- 1995. 9. 제8대 소장 류시조 교수
- 1996. 10. 제9대 소장 류시조 교수
- 1998. 10. 제10대 소장 정진명 교수
- 1999. 3. 제11대 소장 이태언 교수
- 1999. 9. 제12대 소장 류시조 교수
- 1999. 2. 제13대 소장 정용상 교수
- 2002. 9. 제14대 소장 김남철 교수
- 2003. 9. 제15대 소장 박원석 교수
- 2004. 9. 제16대 소장 정진명 교수
- 2005. 2. 제17대 소장 정용상 교수
- 2007. 2. 제18대 소장 김교숙 교수
- 2008. 4. 제19대 소장 박재현 교수
- 2009. 4. 제20대 소장 류시조 교수

#### 4. 주요사업

- 가. 법학이론과 판례연구
- 나. 연구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 간행
- 다. 외국의 법령 및 서적의 번역 · 출판
- 라. 학술회의 및 각종 세미나 개최
- 마. 시민의 법률 복지를 위한 상담
- 바.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5. 간행물

- 1989. 3. 31. 법학연구 창간호 발간
- 1990. 2. 5. 법학연구 제2집 발간
- 1991. 6. 30. 법학연구 제3집 발간

1992. 5. 30. 법학연구 제4집 발간  
1993. 10. 22. 법학연구 제5집 발간  
1994. 12. 30. 법학연구 제6집 발간  
1995. 12. 30. 법학연구 제7집 발간  
1997. 4. 1. 비교법학 제8집 발간  
1998. 5. 25. 비교법학 제9집 발간  
1999. 2. 25. 비교법학 제10집 발간  
1999. 12. 31. 『사이버공간의 법률문제』(비교법연구총서 I)  
2000. 2. 25. 비교법학 제11집 발간  
2001. 2. 25. 비교법학 제12집 발간  
2002. 2. 25. 비교법학 제13집 발간  
2003. 2. 25. 비교법학 제14집 발간  
2003. 3. 3. 『중국회사법론』(비교법연구총서 II)  
2004. 2. 25. 비교법학 제15집 발간  
2005. 2. 25. 비교법학 제16집 발간  
2005. 2. 28. 『위자료 배상법론』(비교법연구총서 III)  
2005. 2. 28. 『미국금융기관규제법』(비교법연구총서 IV)  
2006. 2. 25. 비교법학 제17집 발간  
2006. 2. 28. 『미국 금융지주회사법의 이해』(비교법연구총서 V)  
2007. 2. 25. 비교법학 제18집 발간  
2008. 2. 25. 비교법학 제19집 발간  
2009. 2. 25. 비교법학 제20집 발간  
2010. 2. 25. 비교법학 제21집 발간

#### 6. 활동 실적 현황

1986. 4. 15. 법학연구소 설립  
1988. 10. 26. 한국법학교수회학술대회 개최

- 『민주화 시대에 있어서의 한국 법학의 제문제』  
1989. 10. 6. 한독법률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한국법학회, 한국학술진흥재단 후원)
1993. 10. 18. 법조인 초청 강연회 개최
1995. 11. 16. 법학연구소 설립9주년 기념학술발표회  
『현대한국법학의 동향과 과제』
1996. 6. 8. 춘계학술심포지엄  
『과학기술과 지방자치의 법적 과제』
1996. 6. 9. 비교법연구소로 명칭 변경 및 조직 확대 개편  
11. 7. 비교법연구소개설 및 1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아시아지역 노동법의 동향과 과제』
1997. 11. 13. 추계학술심포지엄  
『가상공간에 있어서 법률문제 I』
1998. 5. 28. 춘계학술심포지엄  
『IMF시대의 통상법과 통상전략』  
11. 3. 추계학술심포지엄  
『가상공간에 있어서 법률문제 II』
1999. 1. 28. 비교법연구소 · 한국법사학회 공동학술대회  
『제49회 한국법사학회 정례학술발표대회』  
6. 19. 비교법연구소 · 영남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제24회 공법학술발표대회』
12. 2. 추계학술심포지엄  
『국제사회와 법』
2000. 12. 8. 추계학술심포지엄  
『중국법의 동향과 과제』
2001. 12. 6. 추계학술심포지엄  
『베트남법의 동향과 과제』
2002. 5. 1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학술연구DB구축사업 업무 협약서 체결
2002. 9. 13. 위스콘신대 메디슨 로스쿨 Kenneth B. Davis Jr 교수 초청 강연회 「미국회사법상의 기업규제」

2002. 11. 27. 추계학술심포지엄  
 「러시아법의 동향과 과제」
2003. 10. 10. 위스콘신대 메디슨 로스쿨 Charles Irish 교수 초청 강연회 「국제통상법의 현재와 미래」
2003. 11. 26. 추계학술심포지엄  
 「인도법의 동향과 과제」
2004. 12. 8. 추계학술심포지엄  
 「제1주제 : 말레이시아법의 동향과 과제,  
 제2주제 : 독일상법의 동향과 과제」
2005. 12. 8. 비교법연구소 추계학술심포지엄  
 「태국법의 동향과 과제」
2006. 9. 25. 조정화 사하구청장 초청강연회  
 “법치주의 발전과 법학도의 역할”
2006. 9. 25. 비교법연구소 한국법제연구원과 MOU 체결
2006. 12. 6. 비교법연구소 추계학술심포지엄  
 「이슬람법과 동향과 과제」
2007. 5. 10. 이상진 부산시 부교육감 초청강연회  
 “법학도의 대학생활”
2007. 10. 25. 비교법연구소 학술심포지엄  
 「한미FTA와 법적과제」
2007. 11. 22. 비교법연구소 · 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이베로아메리카법의 과제와 전망 I」
2008. 4. 29. 프랑스 파리1대학 Jacqueline Morand-Deviller 교수와 성균관대 이광윤 교수 초청특강
2008. 6. 14. 비교법연구소 ·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고위공직자의 청렴기준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실제」
2008. 7. 4. 비교법연구소 · 한국노동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노동법의 현안과 과제」
2008. 11. 28. 비교법연구소 · 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이베로아메리카법의 과제와 전망II」
2009. 10. 26. 비교법연구소 · (사)한국사회복지연구소 공동주최

- 한일국제심포지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2009. 11. 26. (사)한국사회복지연구소 이말선 이사장  
초청강연회  
“법학도의 삶과 생활”  
2009. 12. 10. 비교법연구소 · 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그리스법제의 동향과 과제』



### 〈편집위원〉

류 시 조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위원장)  
권 영 애 (세명대학교 교수)  
김 교 숙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문 제 (경북대학교 교수)  
송 영 민 (원광대학교 교수)  
조 은 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比 較 法 學 第 21 輯

---

2010年 2月 21日 印刷

2010年 2月 25日 發行

發行人 유 선 규  
編輯人 류 시 조  
發行處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研究所  
학교TEL.(82)-51-640-3000  
직통TEL.(82)-51-640-3414  
FAX겸용.(82)-51-640-3212  
<http://home.pufts.ac.kr/~icl>  
E-mail : icl@pufts.ac.kr  
印刷處 世宗文化社  
대표TEL.(82)-51-463-5898

---

